

〈붙임〉 [게시용] 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안내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어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에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이 추가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24.7.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 해당)는 먼저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2024년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 구리·철·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계좌는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통합 운영되므로, 이미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신규로 개설할 필요는 없음

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Ⅰ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이란?

사업자간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6조의9)

* 법정품목: 금·지금(‘08년), 고금(‘09년), 구리스크랩(‘14년), 금스크랩(‘15년), 철스크랩(‘16년), **비철금속류 스크랩**(24.7.1.이후)

▶ 개정내용 : 비철금속류*스크랩 적용대상 품목 확대(‘24.7.1.이후 공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철 및 철을 주성분으로 한 합금 이외의 모든 금속 예)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 등

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및 계좌개설 방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44-204-3229)

■ 비철금속류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간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6조의9)

* 법정품목 : 금지금, 고금, 금스크랩, 구리스크랩, 철스크랩, **비철금속류 스크랩** (‘24.7.1.이후 공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대상) 사업자간에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거래하거나, 사업자가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수입하는 경우
- (계좌개설)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취급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스크랩등거래계좌 개설 필요
- (대금지급) 사업자가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공급받은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공급자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지정은행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
- * 지정은행별 매입자납부 결제서비스 이용(일반 이체거래는 매입자납부 거래가 아님에 주의)
- (가산세 등)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음

■ **스크랩등거래계좌 가입대상** :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간이 포함) 및 법인

■ **지정은행(13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 스크랩등거래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공통 준비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통장 사용인감·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법인등기부등본(기업뱅킹서비스 신청시 필요)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법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개인사업자]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일부 은행 기업인터넷(폰)뱅킹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리인 신규 개설이 불가하며(계좌개설만 가능), ‘가입시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은행에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계좌 개설 및 준수사항

- ☞ 사업자는 위 지정은행 중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함
- *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 전용계좌를 통한 **비철금속류 스크랩 대금지급**은 **시행일인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함
- 다만, 신규계좌에 한해 위 지정은행 영업점에서 전용계좌를 미리 개설할 수 있음
- * 일부 은행은 사정에 따라 비철금속 확대 시행일(‘24.7.1) 이전에 계좌개설이 제한될 수 있음
- ☞ 구리·철스크랩 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 이후 구리·철스크랩 및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시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정은행 변경 가능(기존 전용계좌 해지 또는 보통예금계좌 변경 필요)

■ 문의 안내

- ☞ 국세상담센터 126(2→2), 세무서(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지방국세청(부가가치세과), 국세청
- ☞ **제도 안내**: 홈택스>홈택스 이용 갈집>홈택스 이용 세무서식 안내>주요 제도 소개>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 ☞ **고객센터**: 경남은행(1600-8585), 광주은행(1600-4000), 국민은행(1588-9999), 농협은행(1588-2100), 대구은행(1588-5050), 부산은행(1544-6200), 수협은행(1588-1515), 신한은행(02-2007-9470), 우리은행(1588-5000), 전북은행(1588-4477), 기업은행(1566-2566), 하나은행(1599-1111), 한국산업은행(1588-1500)